

[양식 제1호]

(생 		고 서 ^월	일)] 작성 - 표시さ				하고, 선 ·
① 출 생 자	성명	*한글 한거			/ (명) / (명)			본 (한자)			*	·성별	1남 2여				출생자 출생자
	*출생일/		4		년	월		일	시 분(출생지 시각: 24시각			각제])				
	*출	생장스	소 [1	자티	백 ②병원	②병원 ③기타											
	부	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															
	*주	소								세	세대주 및 관계 의						
	자녀	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															
	부 성명			(한자:	(한자:) 본((한지	자) *주민			민등록	등록번호 -				
② H	모 성명			(한자:) 본(한자)			*주민등록번호 -							
부 모	*부	의 등	록기준	즐지													
	*모	의 등															
혼인신고시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? 예□아니요□																	
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
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				성 명	명				주민등록번호								
			0	등록기준지													
(4)7]1	④기타사항																
⑤ 신 고 인	*성	명				① 또는 서명 주민등·					록번	호	-				
	*ス	- 격	11부	2	모 3동	2 ③동거친족 ④기타(자			자격	격:)				
	주	· 소	-														
	*전 화							이메일]								
⑥ 제출인		성 명	Ħ _O				주민	등록	·번호				-				

-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<u>형법에 의하여 처벌</u>받을 수 있습니다. <u>눈표(★)로 표시한 자료</u>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 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- ※ 아래 사항은 「**통계법」 제24조의2**에 의하여 **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**입니다. 「통계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	Ą]구동향조사						
⑦ 최종	부	① 학력 없음	② 초등학교	③ 중학교	4 고등학교	5 대학(교)	⑥ 대학원 ㅇ	기상
졸업학교	모	① 학력 없음	2 초등학교	③ 중학교	4 고등학교	5 대학(교)	6 대학원 ㅇ	기상

※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× 141 100 020 17/1/19	1 1 40 11 11.				
읍면동접수	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	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			
	*주민등록번호				
	년 월 일(인)				



작 성 방 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 합니다.
- ①란: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(인명용 한자)으로, 이름자는 5자(성은 포함 안 됨)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,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- :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. (예: 오후 2시 30분 → 14시 30분)
 - :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, 서 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"(서머타임 적용)"이라고 표시합니다.
 - :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.
 - :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(시·구의 '동', 읍·면의 '리') 또는 도로명주소의 '도로명'까지만 기 재하여도 됩니다.
- ②란:부(父)에 관한 사항 혼인외 출생자를 모(母)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,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,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 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"부미정"으로 기재합니다.
- ③란: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,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- ④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-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:선순위자(부모)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(예: 부모 사망, 행방불명 등)
 -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
 -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: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.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.
 - 외국인인 부(父)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: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
- ⑥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※ <u>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**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**입니다.</u>
- ①란: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,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'영표(○)'로 표시합니다.

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④ 고등학교에 '영표(○)'로 표시

첨 부 서 류

- 1. 출생증명서 등 1통(다음 중 하나).
 -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
 -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(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)
 -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(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)
 -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
- ※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2. 출생자의 부(父) 또는 모(母)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.
 - 부(父)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(母)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.
 -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(有夫女)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.
- 3. 자녀의 출생 당시 모(母)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(예: 모의 기본증명서) 1통(1998. 6. 14.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).
- 4.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(父) 또는 모(母)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(父) 또는 모(母)에 대한 성명,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(예: 여권, 주민등록등본, 그 밖의 증명서).
- 5.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.
- 6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 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